

2025년 제1회 대구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2025년도 대구전파관리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 11. 19.

대구전파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직종 : 청원경찰
- 수행업무 : 청사방호 (3교대)
- 채용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인원(명)	근무지
대구전파관리소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2 근거법령

-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자격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학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18세 이상인 사람(2007. 11. 19. 이전 출생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의 정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합격 후 바로 임용이 가능한 사람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직무관련 경력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로 근무한 자로서 재직(경력)증명서에 청원경찰로 명시된 경력
- ※ 경비업법에 의한 근무경력(시설경비, 호송경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무도단증 소지자(2단 이상,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인정 가능 무도단체(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스포츠지원포탈 참고>)

대한가라테연맹	대한검도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유도회	대한주짓수회
대한태권도회	대한택견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목·협회 단증은 우대사항 없음

-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1급)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함

□ 2차 시험(면접시험)

- 체력검증은 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nfa.kspo.or.kr)」에서 발급하는 체력인증서로 대체하며, 등급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체력검증은 매월 1일, 16일 선착순 예약

※ 체력인증서는 면접시험 당일 원본(평가내역 포함, 사본 불인정) 제출 시에만 점수를 인정하고,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만 유효

- 면접시험은 청원경찰로서 공익에 대한 봉사·윤리·준법의식과 청사방호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평가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체력측정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한 후 가장 성적이 좋은 순으로 대상자 선발
 - 총점에서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면접점수도 동점 발생 시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가능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5. 11. 19.(수) ~ 12. 1.(월)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원서접수 기간	2025. 11. 19.(수) ~ 12. 1.(월)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2. 5.(금)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5. 12. 19.(금)	5배수 선발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2. 23.(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면접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교부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채용공고란(www.crms.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채용정보란(www.gojobs.go.kr)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5. 11. 19.(수) ~ '25. 12. 1.(월) 09:00~18:00

□ 접수처

지원기관	접수처 주소	전화번호
대구전파관리소	(우)420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대구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53-749-2887

※ 지원자는 **하나의 원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두 무효로 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기재 오류·서류 누락 등에 대해 **보완하는 경우도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것만 인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점심시간 제외) 내에만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12.1.(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7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 가족 증명서)
- 이력서(별지2) 및 자기소개서(별지3) 각 1부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 1부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 주민등록초본은 생년월일만 노출되도록 하며,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무도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중 1개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기관 청원경찰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6)를 반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기간 : 2026.1.2.(금) ~ 2026.1.9.(금)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하여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 결격사유 확인, 채용신체검사, 자격증진위 여부 검증 등을 마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임용 예정입니다.
-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는 대구전파관리소가 정한 임용일정에 따라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하며, 임용연기는 불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구전파관리소 청원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청원경찰 채용시험		(한자)
생년월일	00. 00. 00.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대구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번호		지원관서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 응시번호는 문자 또는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청원경찰 채용시험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주소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5천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전자수입인지는 첨부),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합격자 공고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에 게시함

※ 지원자는 하나의 원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두 무효로 함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랑당자 기재	응시 분야	청원경찰 채용시험	성 명	

나. 응시자격					
신체조건	신체조건 충족여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교정시력 (0.8 이상)	
	O / X			좌 : 우 :	
병역 (남자만 해당)	복 무 기 간	군 별	제 급	병 과	미 필 또는 면 제 사유

다. 우대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 근무경력	기관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무도단증	무술종류	단	취득(연,월,일)		발행기관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 득 기 관		취 득 (연 월 일)		비 고
사무관리 자격증	자 격 종 목		취 득 기 관	취 득 (연 월 일)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가능하나 하단의 성명 및 서명은 자필로 작성

【별지3】

자기 소개서

성명	
20 . . . 작성 자 (서명)	

※ 작성요령

- 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자기계발, 직업관.지원동기, 장래목표 및 포부, 업무수행 의지, 근무경력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학교명, 출생지,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휴먼명조 13 Point, 줄간격 160%. 글자색 검정)

【별지4】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대구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 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아래와 같이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병역사항, 근무경력사항, 자격사항
수집·이용 목적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확인 ※ 응시자격·우대사항 확인 및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등 원활한 채용심사 목적
보유기간	채용절차 완료 후 5년간 또는 반환청구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응시 또는 채용전형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임용자격 확인

신체조건(시력정보 포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2025년 월 일

지원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전파관리소장 귀하

※ 응시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분야	청원경찰채용시험
생년월일			

본인은 대구전파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청원경찰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대구전파관리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과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대구전파관리소장 귀하

[별지 6] (희망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전파관리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